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7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문금주·한민수·강준현

문정복 • 이병진 • 서삼석

이정문 • 이연희 • 김영배

김원이 · 조계원 · 박홍배

박해철 · 주철현 · 김우영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9.7%로 OECD 평균(9.3%)을 넘어섰고,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비중은 OECD 평균인 75.8%보다 13.1%나 낮은 62.7%로 OECD 최하위 수준임.

특히,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2022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.2%,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의 9.5%에 불과해 OECD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,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의 지원확대와 강화가 필요함.

아울러,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가 심화하고, 지방소멸에 따른 지방 의료시설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·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함.

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설립(신축이전, 증축을 포함한다)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(안 제6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 관의 설립(신축이전, 증축을 포함한다)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6조(공공보건의료기관의	설치	제6조(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
· 운영) ① · ② (생 략)		·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보건
		의료 확충을 위하여 공공보건
		의료기관의 설립(신축이전, 증
		축을 포함한다)이 신속하게 추
		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
		경우에는 「국가재정법」 제38
		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
		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.